

의안번호	제534호
의결 연월일	2013년 월 일 (제323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3년 8월 26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4
----------	-----

제출연월일 : 2013. 8. 26.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사회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교육공무원 임용시험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응시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

(안 제5조 제1항 제2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안 제4조)

다. 수수료 징수 면제 조항의 배열 및 미비점 보완(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13. 8. 9. ~ 2013. 8. 19.) : 제출된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증명사항으로 여러 건의 사항”을 “사항으로 여러 건”으로, “각 사항마다 1건으로 하며”를 “건마다”로, “청구할 때에는 매 통마다 1건으로 하고”를 “청구할 경우에는 통마다”로, “매 인에 대하여”를 “1명마다”로 한다.

제4조제3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발급하는 증명

2.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응시수수료 등의 징수를 면제 받고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제5조제2항 본문 중 “증명을 발급받는 자로서”를 “제증명은”으로, “자에 대하여는”을 “경우에”로,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교육지원 대상자”를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적용을 받는 자”를 “적용을 받는 자가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
4.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5.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제5조제3항부터 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수수료의 징수는 증명 및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 시험·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 1, 별표 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삭 제>
② 별표 1의 증명사항으로 여러건의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1건으로 하며, 같은 내용의 증명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 통마다 1건으로 하고, 여러명을 열기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매 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① ----- 사항으로 여러건 ----- 건마다, ----- 청구할 경우에는 통마다, ----- -- 1명마다 ----- --
③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①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1.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발급하는 증명
<신 설>	2.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신원 및 학적에 관한 증명을 발급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2조, 「장애인		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응시수수료 등의 징수를 면제 받고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 제증명은 ----- ----- 경우에 ----- 면제할 수 있다. 1. ----- ----- ----- ----- ----- ----- ----- ----- ----- ----- <u>교육지원 대상자가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u> 2. ----- ----- ----- ----- -----

현행	개정안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자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 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 ④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⑤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⑥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 ----- 적용을 받는 자가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3.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 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 4.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5.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2.9.22] [법률 제11399호, 2012.3.21, 일부개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48호, 20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2.3.23, 타법개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13.4.23] [법률 제24504호, 2012.4.22, 일부개정]

제35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1만원

1의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만원

2. 6·7급 공무원채용시험: 7천원

3. 8·9급 및 기능직 공무원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